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남권 역사문화권 명칭 변경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17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전남권 역사문화권 명칭변경(안 제2조제1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17.

다. 회 부 일 : 2026.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설치를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Ⅲ. 검토의견

1. 전남권 역사문화권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호)

개정안은 ‘전남’ 및 ‘광주’를 ‘전남광주’로 변경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1. ----- -----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u>전남</u>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라. ----- ----- <u>전남광주</u> ----- -----
마. 마한역사문화권: 충청, <u>광주</u> , <u>전남</u>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마. ----- <u>전남</u> <u>광주</u> ----- -----
바. ~ 아. (생략)	바. ~ 아. (현행과 같음)
자. 후백제역사문화권: 충북, 충남, 전북, <u>광주</u> , <u>전남</u>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 시대의 유적	자. ----- ----- <u>전남광주</u> ----- -----

현행	개정안
·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2. ~ 4. (생략)	----- 2. ~ 4. (현행과 같음)

현행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1호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권역을 9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전남’ 및 ‘광주’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2216981)이 2026. 3. 1. 제432회 국회(임시회)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6. 7. 1.부터 시행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역사문화권정비법」 정의 규정 중 ‘전남’과 ‘광주’를 ‘전남광주’로 개정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현행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역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입법례 같이 과거 역사문화권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가 명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역사문화권의 지리적 범위를 포괄하는 권역으로 예시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각 권역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하게 대응하지 않는바, 현행법상 제2조제1호라목의 가야 역사문화권의 경우 전남 지역은 해당 권역에 속하나 광주 지역은 해당 권역에 속하지 않고, 국가유산청이 간행한 가야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연구¹⁾에서도 가야의 공간적 범위를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전북, 전남으로 설정하고 있어 개정안에서 가야역사문화권의 권역을 전남광주로 설정할 경우 실체와 법률 규정 간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일선 행정의 혼란 방지 및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80

1) 국가유산청, 가야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 2025, p.18

참고 1

가야역사문화권의 공간적 범위

구분	관련 지자체(6개 사도의 47개 시군구)	
중심지 (왕도 등)	경북	고령군
	경남	김해시, 함안군, 고성군, 창녕군, 합천군
영향권 (직·간접 통치지역, 군사·외교·문화적 영향지역 등)	부산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영도구, 기장군
	대구	달성군
	전북	남원시, 장수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곡성군, 보성군
	경북	상주시, 성주군, 구미시
	경남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출처: 국가유산청, 가야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 2025, p.18